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54
----------	-----

2023년 6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6월 21일, 이소라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소라 의원]

가. 제안이유

- 독성 농약 등 화학방제작업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 및 운영 책임과 방제 의무가 있는 산림에 있어 친환경 방제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도시숲 등의 친환경 방제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성 농약 등 화학방제작업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 및 운영 책임과 방제 의무가 있는 산림에 있어 친환경 방제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산림보호법」에서는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제20조~제27조)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비화학적 방제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하고 ‘무농약 친환경방제공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시행¹⁾하는 등 다각적인 친환경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2023년에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생활권 수목진료, 소나무류 이동 단속 등을 위해 예산 28억 2천만원³⁾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4개 공원여가센터 및 서울대공원에서도 서울시의 방침을 준용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병해충방제를 시행하고 있음.

1) 길동생태공원(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창포원(북부공원여가센터)

2) 2023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자연생태과-1160, 2023.1.18.)

3) 국비 20억 6천만원, 시비 7억 6천만원

또한, 구청(25개소) 및 사업소(5개소)의 농약사용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농약 선정의 적정성과 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보관실태 및 사용량 점검 등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방제의 화학적 독성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안 제10조의2는 친환경 방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화학방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본 조례안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 최소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약제’의 포괄적 의미에는 친환경 약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문구로 규정하기보다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방제의 대안으로는 임업적 방제와 기계·물리적 방제 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제를 친환경 방제와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약제의 포괄적 의미에는 친환경 약제도 포함할 수 있어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임업적 방제와 기계·물리적 방제 등이 있어 이와 같은 방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54
----------	-----------

제안년월일 : 2023년 6월 21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약제의 포괄적 의미를 고려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화학적 방제의 대안으로 임업적 방제와 기계·물리적 방제 등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주요 골자

- 약제의 범주 안에 친환경 약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약제”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제2항 중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을 “경우”로, “방제를 우선적으로”를 “방제 등의 방법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u>경우</u>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u>방제를 우선적으로</u>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p> <p>-----</p> <p>---- <u>경우</u> -----</p> <p>-----</p> <p>-----</p> <p>---- <u>방제 등의 방</u></p> <p><u>법을</u> -----</p> <p>-----.</p>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u></p> <p><u>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